# 한국모래상자치료학회 모래상자 상담사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

(최근 개정일:2015년 01월 01일)

# 제1장 총칙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모래상자치료학회 (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) 정관 제 4조 4항에 명시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'모래상자 상담사' 자격검정에 필요한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모래상자 상담사라 함은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 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.

## 제 2 장 자격 등급 및 역할

제 3조 (자격구분)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1. 모래상자상담 전문가
- 2. 모래상자상담사 1급
- 3. 모래상자상담사 2급

### 제 4조 (모래상자상담 전문가)

모래상자상담 전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.

- 1. 본 학회 정회원인자
- 2. 본 학회 모래상자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

- 3.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학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
- 4. 본 학회에서 명시된 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모래상자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- 5.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
- 6.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래상자상담사 전문가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담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진 자
- 7.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

## 제 5조 (모래상자상담사 1급)

모래상자상담사 1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학회가 발급 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.

- 1. 본 학회 정회원인자
- 2. 본 학회 모래상자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학사를 졸업한 후 현장경력 2년 이상인 자, 대학원 재학생 및 석사학위 소지자
- 3.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(교육인증기관)에서 모래상자상담 교육분석가 및 전문가의 지도하에 학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
- 4. 본 학회에 명시된 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모래상자상담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- 5.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
- 6.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

#### 제 6조 (모래상자상담사 2급)

모래상자상담사 2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학회가 발급 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.

- 1. 본 학회 정회원이며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
- 2.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(교육연수 인증기관)에서 모래상자상담 전문가의 지도하에 학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
- 3.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모래상자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
- 4.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
- 5.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(모래상자상담사 2급은 자격연수에 윤리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)

## 제 7조 (역할)

모래상자상담사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모래상자상담 전문가

모래상자전문가는 모래상자상담의 전문가로 독자적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- 1)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,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
- 2)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
- 3) 상담 및 심리상담에 대한 연구
- 4) 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
- 2. 모래상자상담사 1급

모래상자상담사 1급은 모래상자상담 기본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모래상자상담 전문가의 지도하에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- 1)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,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
- 2)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, 평가 및 상담
- 3) 상담 및 심리상담에 대한 연구보조
- 4) 상담행정업무
- 3. 모래상자상담사 2급

모래상자상담사 2급은 모래상자상담 기본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모래상자상담 전문가의 지도하에 상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- 1)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운영보조
- 2) 표준화심리검사의 실시 및 채점
- 3) 기타 상담활동의 보조업무

#### 4) 상담행정업무

## 제 3장 모래상자상담사 수련과정

#### 제 8조 (목적)

본 규정은 모래상자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과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9조 (수련자격)

모래상자상담사 자격규정 제 4조, 제 5조, 제 6조, 제 7조에 해당자로서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.

#### 제 10조 (수련과정)

- 1. 수련과정은 수련생이 모래상자상담 교육분석가 및 전문가의 지도하에 모래상자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 요한 수련내용을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.
- 2. 수런과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.
- 1) 학술/연수활동,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및 참여는 자격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본 학회 및 본 학회에서 인정한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실시한다.
- 2) 공개사례발표회는 수련감독자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, 수련감독자 중 2인은 모래상자상담 1급 슈퍼바이저 또는 모래상자상담 전문가 슈퍼바이저여야 한다.
- 3) 수련감독자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에 이행한 수련내용은 수련과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
#### 제 11조 (수련기관: 교육연수 인증기관)

- 1. 수련기관(교육연수 인증기관)은 본 학회에서 모래상자상담사 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.
- 2. 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수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.
- 1) 수련기관이 모래상자상담사 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려면 본 학회로부터 교육연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, 본 학회 모래상자전문가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임상경험자여야 한다.

2) 수련기관(교육연수 인증기관)에서는 자격 급별 상담사의 수련 내용 및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 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상담교육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야 하며,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자격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제 12조 (자격급수별 수련과정)

- 1. 모래상자상담 전문가
- 1)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(교육연수 인증기관) 또는 모래상자상담 전문가가 진행하는 모래상자상 담 관련 워크샵 60시간 이상 이수
- 2) 모래상자상담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분석 20회 이상
- 3) 본 학회에서 주최한 교육연수 60시간 이상
- 4) 본 학회 모래상자상담 1급 슈퍼바이저 및 모래상자 전문가 슈퍼바이저 2인 이상의 개인 상담사례 슈퍼비전 20시간 이상
- 5)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래상자상담 공개 사례발표 : 3회 이상 (1사례당 최소 12회기 이상 진행한 사례에 해당됨. 사례발표는 본 학회에서 사전 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함)
- 6)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래상자상담 공개 사례발표 참석 10회 이상
- 7) 본 학회 학술대회 2회 이상 참가 및 모래상자치료연구 논문 2편 게재
- 8) 본 학회에서 주최한 자격연수 과목 수강 (모래상자치료 Ⅱ, 발달심리 및 평가 Ⅱ, 정신분석 Ⅱ, 분석심 리 Ⅱ)
- 9) 본 학회에서 인정한 수련기관(교육연수인증기관)에서의 수련실습 40시간 이상
- 2. 모래상자상담사 1급
- 1)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기관(교육인증기관) 또는 모래상자상담 전문가가 진행하는 모래상자상담 관련 워크샵 40시간 이상 이수
- 2) 모래상자상담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분석 15회 이상
- 3) 본 학회에서 주최한 교육연수 30시간 이상
- 4) 본 학회 모래상자상담 1급 슈퍼바이저 및 모래상자 전문가 슈퍼바이저 2인 이상의 개인 상담사례 슈

퍼비전 10시간 이상

- 5)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래상자상담 공개 사례발표 : 2회 이상 (1사례당 최소 12회기 이상 진행한 사례에 해당됨. 사례발표는 본 학회에서 사전 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함)
- 6)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래상자상담 공개 사례발표 참석 10회 이상
- 7)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 및 모래상자치료연구 논문 1편 게재 또는 포스터 발표 1회
- 8) 본 학회에서 주최한 자격연수 과목 수강 (모래상자치료 I, 발달심리 및 평가 I, 정신분석 I, 분석심리 I)
- 9)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기관(교육연수인증기관)에서의 수련실습 40시간 이상
- 3. 모래상자상담사 2급
- 1)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실습기관(교육인증기관) 또는 모래상자상담 전문가가 진행하는 모래상자상담 관련 워크샵 20시간 이상 이수
- 2) 모래상자상담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분석 1회
- 3) 본 학회에서 주최한 교육연수 20시간 이상
- 4)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래상자상담 공개 사례발표 : 1회 이상 (1사례당 최소 10회기 이상 진행한 사례에 해당됨. 사례발표는 본 학회에서 사전 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함)
- 5)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래상자상담 공개 사례발표 참석 3회 이상
- 6)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 및 포스터 발표 1회
- 7) 본 학회에서 주최한 자격연수 과목 수강 (모래상자치료, 발달심리)

### 제 13조 (상담수련경력의 산정 시 유의사항)

- 1. 상담수련 경력은 매년 최소 6개월 이상 수련해야하며, 1년 단위로 인정한다.
- 2. 자격 급별 상담사의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상담수련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- 3. 자격 급별 상담사 자격심사시 아래의 수련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1) 학회 가입 이전에 받은 수련 내용
- 2) 2급 자격 취득 후 1급 자격 심사를 받는 경우 : 2급 모래상자상담사 수련요건 심사 신청일 이전에 받은 수런내용

3) 1급 자격 취득 후 전문가 자격 심사를 받는 경우: 1급 모래상자상담사 수련요건 심사 신청일 이전에 받은 수련내용

## 제 4장 자격의 유지

제 14조 (자격의 갱신) 모래상자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3년마다 치료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. 제 15조 (자격의 유지)

모래상자상담 전문가, 1급, 2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

- 1. 모래상자상담 전문가
- 1) 학회비 및 전문가 회비 납부
- 2) 학회에서 요구하는 상담사례지도, 감독과 상담교육실시
- 3) 매 3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2회 이상 참가
- 4) 매 5년 이내에 40시간 이상 모래상자상담 전문가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연수 참가
- 5) 본 학회 사례연구회 발표 3회 이상 또는 사례연구 논문 1편
- 6) 본 학회 사례연구회 3회 참석
- 2. 모래상자상담사 1급
- 1) 학회비 및 상담사 회비납부
- 2) 모래상자상담사 1급에 해당하는 상담실시
- 3) 매 3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2회 이상 참가
- 4) 매 3년 이내에 20시간 이상 모래상자 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연수 참가
- 5) 본 학회 사례연구회 발표 3회 이상
- 6) 본 학회 사례연구회 3회 참석
- 3. 모래상자상담사 2급
- 1) 학회비 및 상담사 회비납부

- 2) 모래상자상담사 2급에 해당하는 상담실시
- 3) 매 3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1회이상 참가
- 4) 매 3년 이내에 20시간 이상 모래상자 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연수 참가
- 5) 본 학회 사례연구회 발표 3회 이상
- 6) 본 학회 사례연구회 3회 참석

#### 제 16조 (윤리강령 준수의 의무)

모래상자상담사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.

## 제 5장 모래상자상담사 자격검정

### 제 17조 (자격과정의 목적)

모래상자상담사 자격검정은 모래상자상담사 자격 심사 및 자격시험시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18조 (검정기준)

자격 급별 모래상자상담사의 자격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- 1. 모래상자상담 전문가
- 1)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상담철학, 상담이론과 실제, 평가와 진단, 상담연구, 임상지도에 관한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, 모래상자상담 전문가로써 갖추어야할 전문적 지식과 이해의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.
- 2) 개인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진단 및 개입, 상담 관련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상담 인력의 교육과 훈련 수행 능력 여부를 평가한다.
- 2. 모래상자상담사 1급
- 1) 준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상담윤리, 상담 이론과 실제, 평가와 진단, 상담 연구에 관한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, 모래상자상담사 1급으로써 갖추어야할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능력을 갖춘 고급수준.

- 2) 개인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개입, 프로그램의 운영, 상담관련 연구를 수행 능력 여부를 평가한다.
- 3. 모래상자상담사 2급
- 1) 대학 학부 재학생으로서 상담이론 및 실제, 발달심리, 심리측정 및 평가의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, 모래상자상담사 2급으로써 갖추어야할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.
- 2) 개인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개입, 프로그램의 운영, 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(접수면접, 사례관리, 상담행정 등) 수행 능력 여부를 평가한다.

#### 제 19조 (검정방법)

- 1. 모래상자상담사 자격검정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- 2. 모래상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친 후, 자격관 리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**자격심사**를 통과하여야 한다.
- 3.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- 1) 필기시험은 자격 급별 모래상자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능력을 평가한다.
- 2) 면접시험은 자격 급별 모래상자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능과 태도를 평가한다.
- 4. 각 자격 급별 모래상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**자격심사**(수련요건심 사)와 **자격시험**(필기시험, 면접시험)에 합격한 후, 본 학회가 발급하는 **자격증**을 수여하여야 한다.

#### 제 20조 (응시자격)

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1. 모래상자상담 전문가
- 1) 본 학회 정회원인자
- 2) 본 학회 모래상자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
- 3)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학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치고 **자격심사**에 통과한 자
- 모래상자상담 관련 교육연수 60시간 이상 이수

- 교육분석 20회 이상
- 본 학회에서 주최한 교육워크샵 60시간 이상
- 개인 상담사례 슈퍼비전 20시간 이상
-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래상자상담 공개 사례발표 : 3회 이상 (1사례당 최소 12회기 이상 진행한 사례에 해당됨)
-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래상자상담 공개 사례발표 참석 10회 이상
- 본 학회 학술대회 2회 이상 참가 및 모래상자치료연구 논문 2편 게재
- 본 학회에서 인정한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실습 40시간 이상
- 2. 모래상자상담사 1급
- 1) 본 학회 정회원인자
- 2) 본 학회 모래상자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학사를 졸업한 후 현장경력 2년 이상인 자, 대학원 재학생 및 석사학위 소지자
- 3)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에서 모래상자상담 전문가의 지도하에 학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수 련과정을 거치고 **자격심사**에 통과한 자
- 모래상자상담 관련 워크샵 40시간 이상 이수
- 교육분석 15회 이상
- 본 학회에서 주최한 교육연수 30시간 이상
- 개인 상담사례 슈퍼비전 10시간 이상
-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래상자상담 공개 사례발표 : 2회 이상 (1사례당 최소 12회기 이상 진행한 사례에 해당됨)
-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래상자상담 공개 사례발표 참석 10회 이상
-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 및 모래상자치료연구 논문 1편 게재 또는 포스터 발표 1회
-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실습 40시간 이상

- 3. 모래상자상담사 2급
  - 1) 본 학회 정회원이며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
  - 2)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에서 모래상자상담 전문가의 지도하에 학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 정을 거치고 **자격심시**에 통과한 자
  - 모래상자상담 관련 워크샵 20시간 이상 이수
  - 교육분석 1회
  - 본 학회에서 주최한 교육연수 20시간 이상
  -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래상자상담 공개 사례발표 : 1회 이상 (1사례당 최소 10회기 이상 진행한 사례에 해당됨.
  -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래상자상담 공개 사례발표 참석 3회 이상
  -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 및 포스터 발표 1회

제 21조 (자격심사 서류)

- 각 자격급별 자격심사 서류는 다음과 같다.
- 1) 자격신청서
- 2) 교육분석가 추천서 (단 2급 모래상자상담사 자격취득예정자는 재학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한다)
- 3)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실습기관(교육인증기관) 또는 모래상자상담 전문가가 진행하는 모래상자상담 관련 워크샵 이수증
- 4) 본 학회에서 주최한 교육연수 이수증
- 5) 모래상자상담전문가이며 모래상자상담 교육분석가가 진행하는 교육분석 확인서
- 6) 본 학회에서 주최한 공개사례발표 확인서 및 공개사례발표 참관 확인서
- 7) 본 학회에서 주최한 자격시험 합격증
- 8) 본 학회에서 주최한 학술대회 참가 확인서
- 9)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기관(교육연수 인증기관) 상담 수련 실습 수료 증명서 1부 (단 2급 모래상 자상담사 자격취득예정자는 제외한다)

## 제 22조 (필기시험 출제 영역)

자격 급별 모래상자상담사 필기시험의 출제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- 1. 모래상자상담사 2급: 모래상자치료, 발달심리(2개 과목 실시)
- 2. 모래상자상담사 1급: 모래상자치료 [, 발달심리 및 평가 [, 정신병리 [, 분석심리 [ (4개 과목 실시)
- 3. 모래상자상담전문가: 모래상자치료 Ⅱ, 발달심리 및 평가Ⅱ, 정신병리Ⅱ, 분석심리Ⅱ(4개 과목 실시)

## 제 23조 (출제형식)

자격 급별 모래상자상담사 필기시험은 5지선다형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며, 자격 급별 모래상자상담 사의 필기시험 문항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- 1. 모래상자상담사 2급 : 각 영역별 25문항씩 50문항
- 2. 모래상자상담사 1급: 각 영역별 25문항씩 100문항
- 3. 모래상자상담전문가: 각 영역별 25문항씩 100문항

## 제 24조 (출제위원)

- 1. 시험과목의 출제위원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전문가와 전공교수로 선정하여 위촉한다.
- 2. 출제위원 등의 선정 ·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# 제 25조 (출제 및 시험관리)

- 1. 시험 출제는 객관적이고,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2. 필기시험은 같은 날, 같은 장소에서 치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3. 시험 출제와 관리, 고사의 시행 및 관리, 채점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# 제 26조 (필기시험의 합격 사정)

1.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과목의 최저 점수는 40점이며, 각 급별 자격 시험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최저 점수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.

2. 필기시험의 합격 효력은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만 5년으로 한다.

#### 제 27조 (필기시험 응시 접수)

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요건 중에 있는 자로서 수수료와 함께 심사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#### 제 28조 (면접시험)

- 1. 수련요건심사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2. 면접시험의 출제영역 및 문항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1) 모래상자상담사 2급: 자료 분석과 상담사례개념화 2개 영역에서 각 1문항
- 2) 모래상자상담사 1급: 자료 분석과 상담사례개념화 2개 영역에서 각 1문항
- 3) 모래상자상담전문가: 연구 설계와 상담슈퍼비전 2개 영역에서 각 1문항
- 3. 면접시험은 구술시험의 형식으로 진행된다.
- 4. 면접위원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.
- 5. 면접시험은 면접시험 채점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.
- 6. 면접시험의 합격은 60/100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얻는 자에 한한다. 불합격자는 필기시험의 합격효력이 유효한 때까지 면접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.

## 제 29조 (면접시험 응시 접수)

각 급별 모래상자상담사 면접시험 응시 접수는 다음과 같다.

- 1. 각 급별 모래상자상담사 면접시험 접수
- 2.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

## 제 6장 필기 및 면접시험, 부정행위자 처리

제 30조 (위원 구성 및 임기)

- 1. 자격관리위원장은 모래상자 상담사 자격시험의 객관성,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자격시험 시행을 위하여 출제위원, 심의위원, 선제위원, 고사관리위원, 시험감독위원, 면접시험위원 등 필요한 위원들을 선임하고 학회장은 이들에 대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.
- 2.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 31조 (수험사항 공고)

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시험 일시, 장소, 일정,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시험 예정일 2개월 전에 학회 홈페이지 게시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한다.

#### 제 32조 (수험장 준비)

시험장 관리책임자는 자격관리위원장으로 하며 당해 자격시험 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 검하여 자격시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

#### 제 33조 (시험문제 출제)

시험 문제의 출제 절차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.

- 1. 출제위원의 수는 필기시험의 경우 과목별 4명, 면접시험은 3명으로 한다.
- 2. 출제위원의 출제 문항 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.
- 1) 필기시험: 각 과목별 출제 지침에 따라 10개 문항을 출제한다.
- 2) 면접시험: 과목별 출제 지침에 따라 2개 문항을 출제한다.
- 3. 출제위원은 출제 완료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- 1) 필기시험: 문항 제작이 완료되면 문항 카드 및 이원분류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.
- 2) 면접시험: 문항제작이 완료되면 문항카드, 채점표 및 채점기준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.
- 4. 심의위원은 출제위원이 개발한 문항을 심의·검토하여 문제은행에 보관한다.
- 5. 선제위원은 시험의 과목별 문항 추출 기준에 따라 추출된 문항에 대한 선제 작업을 수행한 후 문제지 편집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- 1) 필기시험: 문제지 편집 지침에 따라 문제지를 편집하고 이원분류표와 정답표를 작성하여 자격관리위

원장에게 제출한다.

- 2) 면접시험: 문제지 편집 지침에 따라 문제지와 채점표를 편집하고 채점기준표를 작성하여 자격관리위 원장에게 제출한다.
- 6. 자격관리위원장은 문제의 출제, 심의, 선제, 검토와 관리 등에 필요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 제 34조 (보안유지)

- 1.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장은 시험문제의 출제, 심의, 선제, 검토, 인수, 보관, 관리 등에 대한 지휘·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2. 문항 관리는 관리책임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한 곳에 비축할 수 있는 문제은행 시스템을 운영한다.

#### 제 35조 (시험문제 인쇄 및 인계인수)

- 1. 시험문제 인쇄는 인쇄 여건, 보안 여건 등을 검토하여 자격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보안 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- 2.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3. 시험문제지는 시험일 1일전까지 발간하여야 하며, 자격관리위원장은 발간도중의 보안관리와 발간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시험관리요원을 지명하여야 한다.
- 4. 시험관리요원은 발간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지 등을 별도 용기에 봉인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5. 시험관리요원은 제작된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등급별, 과목별로 구분하여(면접시험의 경우, 면접시험 문제지와 채점표 및 채점기준표를 등급별로 구분하여) 필요한 수량만큼 인쇄하여 봉투에 담아봉인하고, 시험문제지의 수량과 봉인상태를 확인하여 시험시작 30분전까지 고사관리본부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, 문제지 인계·인수사항을 기록하여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6. 고사관리본부 책임자는 시험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 관리하되, 인수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7. 시험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.

## 제 36조 (시험관리위원회)

- 1. 자격관리위원장은 검정시행을 위하여 시험장소에 고사관리위원회를 설치/운영하고 시험관리위원회 책임자와 감독위원 및 진행요원을 위촉 임명한다.
- 2. 시험관리위원회 책임자는 감독위원 및 진행요원 등 고사관리위원들을 사전교육 및 지휘감독하고 응시 자 시험시행을 총괄한다.

## 제 37조 (시험관리위원의 임무)

시험관리위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- 1. 감독위원은 응시자 교육, 시설·장비점검과 확인, 응시자 본인여부 확인, 시험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,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업무를 담당한다.
- 2. 진행요원은 시험관리위원회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응시자 교육, 시험장 질서 유지, 시험감독위원의 근무상태 확인 점검, 고사장 내의 응시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
## 제 38조 (필기시험 시험장 편성 및 시험감독)

- 1. 시험장은 사정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부정방지를 위해 적정 간격의 좌석 배치를 하여야 한다.
- 2. 시험감독을 위해 1개 고사장에 2명의 감독위원을 둔다.
- 3. 시험장 감독위원은 운영본부 책임자로부터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수령하여 해당 시험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 응시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답안지에 날인하여야 한다.
- 4. 시험장 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퇴실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위원회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5. 시험장 감독 위원은 답안지 작성이 끝난 응시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,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.
- 6. 시험장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시험시간이 종료되면, 시험문제 및 답안지 봉투표지에 응시 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날인한 후 운영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 39조 (면접시험 시험장 편성 및 면접 진행)

- 1. 시험장은 시험장 사정을 고려하여 편성한다.
- 2. 시험장은 시험일 1일전에 학회에서 감독자를 파견하여 사전 점검토록 한다.
- 3. 면접위원은 운영본부 책임자로부터 면접시험 문제지, 채점표 및 채점기준표를 수령하여 해당 시험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 응시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채점표에 날인하여야 한다.
- 4. 수험생은 3인을 한 조로 편성하고 면접위원은 2인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면접한다.
- 5. 면접위원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시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즉시 퇴실조 치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 종료 후, 시험관리위원회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6. 면접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, 면접시험문제, 채점표 및 채점기준표 봉투 표지에 응시현황을 기재하고 면접위원의 성명을 날인한 후 운영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 40조 (필기시험의 채점)

- 1. 시험감독 책임자는 회수한 시험문제 및 답안지를 인수하여 봉인한 상태로 시험관리위원회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- 2.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.
- 3.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, 답안지 등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 41조 (면접시험의 채점)

- 1. 시험관리위원회 책임자는 면접시험 시작 전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면접시험문제와 채점기준 및 채점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.
- 2. 면접위원은 담당 영역에 대한 채점기준표를 바탕으로 엄정히 평가한다.
- 3. 면접위원은 면접시험 종료 즉시, 면접시험 문제지, 채점표 및 채점기준표를 봉투에 밀봉하고 서명한 후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- 4. 면접시험 채점표는 시험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.
- 5. 시험 종료 후 면접시험문제, 채점표, 채점기준표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워칙으로 한다.

### 제 42조 (부정행위자의 기준)

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3 년간 필기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.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- 1.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
- 2.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
- 3.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자
- 4.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
- 5.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자
- 6. 시험장 내·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
- 7. 대리 시험을 치른 자 또는 치르게 한 자
- 8.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

#### 제 43조 (부정행위자의 처리)

- 1. 시험감독위원 또는 면접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필기시험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(면접시험의 경우, 면접시험을 중지시키고)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하며, 그가 확인·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·날인한 후 고사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2. 고사관리위원장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
## 제 44조 (사후적발 처리)

- 1. 수험자 간에 성명,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한다.
- 2.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 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.
- 3. 고사관리본부 책임자는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

정행위자를 처리하고,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## 제 45조 (시험장 질서 유지 등)

시험감독위원 또는 면접 위원은 시험장 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
- 1. 시험장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
- 2. 시험장내의 각종 시설, 장비 등을 파괴, 손괴하는 행위
- 3. 기타 시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응시행위를 중시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행위

#### 제 46조 (보칙)

- 1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2. 본 규정의 변경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.

## 부 칙

- 1.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규정의 변경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.
- 3.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